

의료법			번호: IV - B - 4							
제 목	국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보건의료법률환경의 변화								
	영문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of Health Care System Resulting from Opening the Health Care Service Market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장옥 ¹⁾ , 이선규 ²⁾ 이경환 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¹⁾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협동과정 ²⁾								
	영문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College of Medicine1),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								
분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표자	장옥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1. 목적										
2001년 1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을 주요의제로 하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라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다. DDA출범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개방압력이 거세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력이 진출하게 되어 국내의 의료기관과의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선진화된 외국의 보건의료기술, 경영기법이 유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가져오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입법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DDA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범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에 대한 해석법학적인 접근 및 분석을 통해 관련법규들들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로 개방가능성에 따른 각국의 양허현황들을 비교검토하여보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관련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입법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3. 결과										
서비스무역의 공급방식에 따라 협상의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협상의 형태에 따른 협상내용을 살펴보고 문제될 수 있는 관련법률사항을 제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경간 공급(Mode 1) :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원격의료 및 처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 개정의료법에도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형태가 국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 2) 해외소비(Mode 2) :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환자의 해외진료). 해외진료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3) 상업적 주재(Mode 3) :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영리의료법인의 인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이 설립이 가능한데 향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 4) 자연인의 이동(Mode 4) : 보건, 의료인의 자격 및 인력의 국제적 이동(면허의 상호인정). 인력이동의 경우 다른 서비스 교역방식에 비해 각국이 월선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의료전문직에 대한 각국의 양허수준을 살펴보고, 외국의사면허소지자의 국내활동여부 및 외국인의 국내의사면허취득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4. 고찰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많은 이들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교역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막연히 개방의 부정적 측면 또는 긍정적 측면에 연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양허요구에 대한 협상의 결과 및 개방 압력동향을 파악한 후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입법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